의안번호	2201178
의 뢰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4.08.21.
추계번호	24D14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함(제6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가. 판결서 공개

❑ 개정안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개선, 추가인력배치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 공개관리시스템은 자동비실명사용률이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시스템 처리속도, 처리가능 파일 크기 및 문자인식 기능 저조 등의 문제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판결서 공개를 위한 비실명화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3년 기준 판결 선고 후 공개가능하도록 처리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민사판결서의 경우 75.7일 소요되었음

[표 1] 판결서 공개를 위한 비실명화 처리 소요기간 및 예산 현황

연도	구분	연간처리건수	처리 소요기간(일)	결산 (백만원)
2019	공개형사	223,845	24.0	2,878
	공개민사	203,082	23.5	
	제공	51,929	6.7	
	계	478,856	21.8	
2020	공개형사	237,756	26.0	3,006
	공개민사	209,845	23.7	
	제공	48,463	6.1	
	계	496,064	22.9	
2021	공개형사	237,097	34.4	3,080
	공개민사	203,970	32.2	
	제공	60,594	10.4	
	계	501,661	30.6	
2022	공개형사	210,108	34.5	2,960
	공개민사	220,363	37.1	
	제공	70,371	15.1	
	계	500,842	32.7	
2023	공개형사	217,698	57.2	3,260
	공개민사	290,285	75.7	
	제공	53,454	17.7	
	계	561,437	59.8	

주: 제공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른 판결서 및 국회요구자료 등이 포함되며, 2023년부터 민간 미확정판결서 공개로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함
자료: 법원행정처

❑ 개정안에 따라 10일 이내에 판결서가 공개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개선, 인력증원 및 사무공간 마련,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등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자료 부재로 합리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판결서등의 무료 열람 및 복사

❑ 최근 열람서비스 건수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수수료수입은 14억 7,200만원 수준이며, 열람·복사 수수료를 무료로 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됨

○ 민사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 수수료 단가는 현재 건당 1,000원임

[표 2] 민사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 수수료 수입 내역

(단위: 건,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결제건수	145,180	228,212	566,635	1,122,667	1,539,663	3,602,357
결제금액	145,180	228,212	566,635	1,122,667	1,539,663	3,602,357
결제대행 수수료	6,359	9,709	24,382	49,081	67,283	156,814
정산금액	138,821	218,503	542,253	1,073,586	1,472,380	3,445,543

자료: 법원행정처

❑ 개정안에 따라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무료로 할 경우, 열람·복사 수수료 수입 감소 뿐만 아니라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판결서 열람서비스 등 연관 시스템과 하드웨어 구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Ⅳ.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